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. 7. 16 선고 2018가단25 판결 [채권자대위에 의한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7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B에게 논산시 C 대 364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. 11. 22. 접수 제371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정호

별지